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018. 2. 1)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월 17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8년 1월 18일(목)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5. 개정이유

연내 개관예정인 아현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6. 주요내용

- 가. 아현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 설치 근거 마련(안 제9조)
- 나. 한시기구(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 만료에 의한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의2)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이 만료('17.12.31.)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하고, 아현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 설치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아현건강증진센터는 아현 주민복합시설 2층에 854㎡의 규모로 2018년 7월경에 개소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지역적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적, 지리적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은 2018.1.4. ~ 1.10.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2018. 2. 1)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월 17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8년 1월 18일(목)

4. 관계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5.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6. 주요내용

- 가.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결정,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다.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지급방법 등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7.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이 2018.1.1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재난이란 매우 광범위 하고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난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재난으로 고통 받는 구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시설 복구를 위해 위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더불어 우리 마포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6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되는 등 역대 최고의 점수로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당당히 1위라는 위업을 달성한 만큼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합심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018. 2. 1)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8년 1월 17일(수)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8년 1월 18일(목)

4. 관계법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5.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 사항 중 애완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6. 주요내용

가. 제4조(행위의 제한) 제1호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사항에 장애인 보조조건 예외사항을
추가

- 애완동물에 ‘장애인 보조조건을 제외’ 명시

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의 제한 사항 중 애완동물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장애인 보조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
장까지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

○ 장애인 보조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조건을 제외’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보조조건을
동반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위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